

## 이것이 알고 싶다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 질 의 : 이진우

저희 회사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기관 입니다.

현재 방사선안전관리자(일반면허)가 선임되어 있구요.

혹시 현재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국내외 파견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의무 유무는?  
 - 예전에는 있었는데..지금은 법규를 잘 못찾겠네요..
2. 위의 사항시 법적인 절차는?(대리인 지정 등)

#### ◎ 답 변 : 김경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규제부 방사선량규제실)

원자력법 개정('99. 2) 이전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질병, 여행 기타의 사유로 30일 이상 업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대리자를 선임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시 동 제도가 허가기준(인력확보)으로 변경되어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과기부와의 업무협의 결과 이를 보완할 법 개정 전까지 다음과 같은 지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원자력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허가사용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질병, 여행 기타의 사유로 부재시에 조치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허가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30일 이상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다음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당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보기준과 동일한 면허의 소지자중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나. 다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보기준이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일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의 소지자를 그 대리자로 확보할 수 있다.
2. 허가사용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확보한 때에는 확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